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57
----------	------

발의연월일 : 2007. 3. 30.

발 의 자 : 안재홍 의원 외 6인

1. 제정이유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었고, 2005. 8. 17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계획 등 사전에 검토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공무원과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전체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검토요청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협의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대상사업의 검토협의를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함 (안 제12조).

3.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전문개정 2005.1.27 법률 제7359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개정 2005.8.17 시행령 제19003호]
- 자치구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현황

4. 예산수반 사항 :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④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본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전체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7일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검토협의 요청 등) ①본부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 등)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검토협의를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검토협의를 참여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계획(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1. 총괄 의견
2. 세부(분야별) 검토의견
3. 기타 의견

위와 같이 ○○계획(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 토 자 : (서명 또는 날인)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